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세부내용

1.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는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공정거래 법집행의 '혁신'을 강조하며, 조사와 사건 처리에서는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의 효율화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투명한 절차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위는 사건 진행절차 전 단계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i) 최초 조사 단계에 피조사기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ii) 조사 진행 단계에서도 자료제출 등 조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며, EU에서의 '사건진행상황회의(State of Play Meetings)'와 같은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iii)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현재 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결정 사항인 '심의속개'를 대규모 사건에서는 신청시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활성화하고, 과징금 사건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신설되는 '이의제기 절차'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이 조사에 협조하면서 자료제출 범위 등 절차에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반영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객관적 기준 – 설득력 있는 공정한 사건처리 기준 마련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대상을 명확화 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심사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수요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시장 현실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제개정 계획을 밝힌 심사지침의 경우 상당한 범위의 사업자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제개정 동향을 계속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속한 처리 – 선택·집중을 통한 법집행 효율성 제고**

공정위는 법위반 예방, 분쟁조정 등 민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의 사건 처리 또한 제재보다는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가맹·대리점 관련 거래에서의 단순질서위반행위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이양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며, 장기사건 특별점검, 실시간 사건현황판 설치, 쟁점이 많고 사실 관계가 복잡한 대형사건 전담팀 구성 등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공정위는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발현되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경쟁제한적 규제 – 진입규제, 사업활동 제약 등 규제 혁파**

공정위는 단순히 기업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 개선을 넘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을 완화하고, 카세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신규사업자의 진입규제로 작용하거나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약하였던 경쟁제한적 규제를 혁파하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집단 –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 제도 운용**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이고, 사외이사의 독립경영회사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일정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하고,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해 공시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M&A 심사 – 신속심사 + 자율성 보장으로 사업재편 지원**

공정위는 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 등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기업이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한 후 협의하는 방식으로 M&A 심사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결합심사에서 기업의 자체시정방안 제출 절차가 정식으로 도입될 경우, 기업결합당사회사 및 관련 산업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고, 당사회사들이 해외 경쟁당국에 제출하는 시정방안과의 정합성도 높일 수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방안 제출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적절한 시정방안의 마련 및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가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3. 시장 반칙행위 근절

공정위는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한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 **독과점 남용 –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정**

공정위는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ICT 분야의 주요 독과점 남용행위 사례로 (i) 지재산 분야에서 표준필수특허 남용, (ii) 반도체 분야에서 장기계약 강제행위, (iii) 모바일 OS 분야에서 새로운 OS 출현 방해행위, (iv) 앱마켓 분야에서 경쟁 앱마켓 배제 등을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기존의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여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응하고 있는바, ICT 분야 기업들은 관련하여 문제될 여지가 없는지 사업모델과 거래관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르텔 –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 근절**

공정위는 최근 병과류, 육계, 오리, 철근 등 담합제재 사례를 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공공발주자의 입찰관여행위(들러리 섭외 요청 등)를 방지하며 민간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등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내부거래 –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는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급증(2021 년 5 월 265 개에서 2022 년 5 월 835 개로 570 개사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감시의 강화는 지난 5 월 새정부 국정과제 및 6 월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온 과제로서, 새롭게 규율대상이 된 기업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자체적인 내부거래 점검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속고발 – 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제도 운용**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고발지침을 개정, 고발기준을 좀더 객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의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고,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 **납품단가 조정 –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이를 위하여 시장실태·법위반행위 조사 등 사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센티브 제공(우수기업 공정거래 협약평가지 반영, 연동계약서 사용시 벌점 감경 등)하고, Best Practice 공유 등 시장 자율적 연동을 확산시키고,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은 지난 5 월 새정부 국정과제 및 6 월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강조된 과제로서 향후 법제화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 '종합적인 근절대책'으로 철저히 차단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의 경우 적발, 조사 및 제재 순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와 협업하여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등 적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기술탈취행위 조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수시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법위반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등을 지원하며, 조정과정에서 감정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시정조치 완료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허용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지난 6 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중점과제이며, 이번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법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에서는 이들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상황을 점검하고 하도급거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플랫폼 – 혁신성장을 위해 자율규제로 공정성 보완

공정위는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달앱, 오픈마켓 등 주요 업종별로 갑을·소비자 이슈(과도한 수수료,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소위 짝퉁 제품의 유통, 소비자 리뷰의 조작 등)에 대한 논의를 지원하고,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CP 평가시 가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7 월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와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규제 방안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상공인·납품업체 –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시정

공정위는 소상공인·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중점 감시할 계획입니다.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간섭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시정할 계획입니다.

5.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공정위는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디지털 소비자 –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 집중 점검

공정위는 SNS 뒷광고, 거짓후기 게재, '눈속임 상술(소위 'Dark Pattern')' 등 기만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MZ 세대 관심 분야(게임 아이템, 명품 커머스 등)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법령의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안전 –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공정위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민생 보호 – 국민 생활 밀접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는 생활·여가 품목(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SW, 항공마일리지 등)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하고, 新 기술·서비스(전기차, 5G 등) 관련 과장·기만 광고를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